

---

# AI 시대

# 개인정보 정책 방향

---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 직 동

2024. 6. 20.

# Contents

## I. 추진배경

- 1) 글로벌 AI 환경 2)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3) AI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

## II.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방향

## III. 핵심 추진과제

- 1)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

- 2) 원칙 중심 규율체계 구체화

- 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② 공개된 정보 활용 ③ 생체정보 합리적 규율체계  
④ 합성데이터 활용 ⑤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⑥ 투명성 확보

- 3) AI 리스크 평가 모델

- 4) 기업·연구자·정부기관 지원

- ① 사전 적정성 검토제 ② 개인정보 안심구역 ③ 규제 샌드박스 ④ 공익 목적 AI 개발·활용 지원

- 5) 국제논의 주도

## IV. 기타 주요 추진과제

- 1)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보호

- 2)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선

- 3)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

- 4)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

# I. 추진배경

## AI 기술·산업의 폭발적 진보



✓ Key point

## “편익” vs “리스크”

### 기회

- 국민의 삶의 질 제고
- 사회적 난제 해결 (신약 개발, 범죄 예방 등)
- 신규 비즈니스 창출
- ...

### 위험

- 개인정보 유·노출
- 편향과 차별
- 허위정보
- 딥페이크 ...

# 1. 글로벌 AI 환경



- 글로벌 최대 AI 빅테크 보유
- 바이든 AI 행정명령('23.10.)
- 민감정보 거래제한 행정명령('24.2.)
- OMB AI 메모랜덤('24.3.)
- 연방 "APRA" 제정 상하원 합의('24.4.)



- "Pro-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"('23.3.)
-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('23.11.)
- ICO 웹 스크랩 학습의 적법 근거 기준(안) 공개('24.1.)



- 2024 중국 양회
- AI 기술·산업 육성 가속화
- 개인정보보호 수준(?)



- AI 기술·산업 생태계 보유
- "인공지능법" 입법 논의 중

➡ 한국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



- 세계 최초 규제 법안 "EU AI Act" 통과('24.3.)
  - AI 안전성 확보에 방점
- 개인정보보호 수준↑(GDPR), 국가별 미묘한 차이
  - (프랑스, 독일) 자국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연성적 규율 희망, 프랑스 CNIL 공개된 정보 활용 AI How-to sheets 발표('23.10.)

## 2.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

### 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”

- ✓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·활용 방지
- ✓ 국민의 기본권 보호(자기결정권, 인격권, 평등권, ... )
- ✓ AI 산업·기술 혁신 지원
- ✓ AI 기업·연구자의 불확실성 제거
- ✓ 공익 목적(범죄예방, 사회적 난제 해결 등)의 AI 개발·활용 지원

# 3. AI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

##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

서비스 매개, 사전에 수집  
목적·항목 특정하여 동의 획득



AI 개발·학습 과정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 
처리, 서비스 매개 X, 사전 예측 어려움

## 위험의 복잡성

예측 가능한 정형적 위험  
(유출, 목적외 이용, ...)



다양한 위험 요소 상존  
(AI 유형·용례별 리스크 크기·종류·발생확률 차이)

##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필요

나라마다 보호법에 조금씩 차이



AI 서비스에는 국경 X  
※ O/S 모델 확산 시 적절한 안전장치 필요

## II.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방향 기본 원칙

### 규정 중심(rule-based) → ‘원칙 중심’(principle-based)

-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율체계의 신속성·유연성 확보
- 기존 개인정보보호 원칙·규제를 AI 특성에 맞게 적용·해석하는 기준 마련

### 기업·연구자 스스로 AI 생명주기 쏠 단계에서 위험평가·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조치 노력을 강화

- 기획 - 데이터 수집 - 학습 - 서비스 등 쏠 단계에서 PbD 원칙·철학 반영

### 위험도에 비례한 규율체계로 접근

- 일률적 · 형식적 행위규율 → 위험도에 비례한 유연한 규율

# 1.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(법 제37조의2 신설)

사람의 개입이 없는 '완전히 자동화된 결정'이 내려지는 영역

## 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(영 제44조의4)

- ▶ 자동화된 결정의 **기준 및 절차, 처리되는 방식** 등을 **사전에 공개**(지속성이 없는 경우 사전 고지로 같음)
- ▶ **표준화·체계화된 용어** 및 **시각화된 방법**을 활용

## ② 정보의 제공 등 대응권 보장 (영 제44조의3)

- ▶ **설명 요구, 의견제출 및 검토 요구**
  - **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**을 제공
  - **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**  
※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사전 공개사항으로 같음
- ▶ **거부** (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의 경우)
  - 해당 결정을 **적용하지 않는 조치**,
  - **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등 조치 후 결과 통보**

###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

- ① **실질적인 사람의 개입 없이**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
- ② **개인정보를 처리하여**
- ③ **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 결정**

※ (예시)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·결정하는 맞춤형 광고 및 뉴스 추천, 본인 확인 등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음

개정 법령은 '24.3.15.시행, '24.6월까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담은 고시 및 안내서 제정 추진

## 2. 원칙 중심 규율체계 구체화

### 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('24.2월 완료)

#### WHY

- AI 기술발전, 컴퓨팅 자원 발달로 데이터 활용 수요 변화 (정형 → 비정형)
-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미비  
→ 현장의 불확실성↑  
(위험하거나 과도한 가명처리)

#### WHAT

-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원칙
-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
- 개인식별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 & 조치가이드
- '주요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' 7종  
(의료데이터, CCTV 영상, 음성 대화·상담 정보 등)

### ②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(~'24.6월 예정)

#### WHY

- 공개된 정보 → AI의 핵심 학습데이터 소스  
※ 프랑스, 영국 등에서 정당한 이익 관련 세부기준 마련 중

#### WHAT

- 대법원 판례(객관적 동의 의사 추단),  
정당한 이익(보호법§15①제6호)의 적용기준  
※ 목적의 적법성 + 처리의 불가피성 + 이익 형량

#### ISSUE

- AI 학습의 성격
- 공개된 정보와 이용자 정보의 차이점

## 2. 원칙 중심 규율체계 구체화

### ③ 생체정보 합리적 규율체계 (~'24.12월 예정)

#### WHY

- 생체인식기술 발전, 생체정보 활용 시 편리성↑ → 생체정보 활용 증가  
※ 국내 생체 인식 시스템 시장규모: ('20)1.3조 → ('24)2.5조 (원)
- 사생활 침해, 추적·감시 도구화 우려

#### WHAT

- 생체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
  - 다양한 생체정보 처리목적·상황별 처리요건
  -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 강화된 보호기준 제시
-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및 보장방안 마련
  - 생체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보장 (대안 선택권, 처리목적과 수단 간 비례 등)

#### ISSUE

- 민감정보 관련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↑ → 적절한 합의점 도출 필요

### ④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(~'24.11월 예정)

#### WHY

- 안전한 AI 학습을 위한 합성데이터 활용 주목  
※ '30년에는 AI 학습모델에서 합성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를 압도할 것으로 예측(Gartner, '21.6)
-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미비로 생성·활용 저조  
⇒ 민간의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·활용 지원 필요

#### WHAT

- 합성데이터 생성의 절차 및 방법
- 유용성,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
-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시 주의사항, 사례

#### ISSUE

- 유용성·안전성 상충관계에 대한 균형점 모색

## 2. 원칙 중심 규율체계 구체화

### ⑤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(~'24.9월 예정)

#### WHY

- 자율차, 로봇,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확대
- 개인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기준 필요
  - ※ 보호법 §25의2(이동형 CCTV 운영 제한) 신설 ('23.9.15)
    - 업무 목적 촬영시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
    -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
    - 목적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 촬영 등 법적 기준 제시

#### WHAT

- 영상기기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
-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
- 영상정보 AI 학습시 고려사항

#### ISSUE

- 기술 발전 →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등장 (안면인식, 감정인식, 동선 추적, 행동 감시 등)

### 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(~'24.12월 예정)

#### WHY

-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
  - 복잡성 & 예측 어려움
  - ※ 10개 주요 LLM 평균 투명성 지수는 37% ('23.10., 스탠퍼드대)
- 정보주체의 신뢰 확보,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매커니즘으로서 투명성 논의 활발
  - ※ OECD AI 원칙, EU AI법, 미국 AI RMF 등

#### WHAT

-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, 처리목적, 방법 등 공개·고지의 구체적 기준
- 자동화된 결정 포함 AI 서비스 단계에서의 정보주체 권리(처리정지요구권 등) 보장방안

#### ISSUE

- 영업비밀 보장, 기업 부담 vs 국민 권리 보장 간 조화

# 3. AI 리스크 평가 모델(~'24.9월 예정)

## WHY

- EU AI Act, 미국 행정명령과 NIST AI RMF
- AI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 
→ 기업의 자발적인 리스크 평가, 저감 노력 지원

## WHAT

- AI 유형, 용례별 리스크 평가 모델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AI 유형과 용례의 식별 | ② 리스크의 배치   |
| ③ 리스크의 측정       | ④ 리스크 저감 방안 |

- 리스크 평가모델 활용 권고 기준

- ▲ 내부 통제의 관점 ▲ CPO의 역할 ▲ 레드팀 운영

## ISSUE

- ‘프라이버시’ 관점에서의 AI 리스크를 유형화·세분화
-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

\* 프라이버시 위험과 공정성 등 기본권 관련 규율체계의 내용·절차 정합성↑, 기업 부담↓

### AI 유형 구분(안)

#### 학습 단계

- 범용 모델(기반 모델)
- 특정 용도 모델

#### 활용 단계

- 생성 모델
- 평가 모델
- 인지 모델

# 4. 기업·연구자·정부기관 지원

## 사전 적정성 검토제

- ▶ AI 등 신서비스·신기술 기획·개발 시 적합한 **보호법 적용방안**을 사업자와 **개인정보위가 함께 마련**
- ▶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건  
→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 X

## 규제 샌드박스

- ▶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**자율주행로봇 기업**의 **영상데이터 원본 활용** 제한적 허용('24.2.5.~)
- 단,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 충족 필요
- ※ 외부망 분리, 엄격한 접근통제, 외주인력 관리, 암호화 등

## 개인정보 안심구역

- ▶ 연구자·스타트업들이 **개인정보**(특히, 가명정보)를 보다 **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는 공간 ('23.12월, 통계청, 국립암센터 지정 완료)

기존	→	안심구역 도입 후
단기 활용(통상 6개월~1년)		장기 활용(최대 5년)
일회성 활용 후 파기		재사용·제3자 활용 가능
가명처리 적정성 전수검사(비용·시간 多)		빅데이터 샘플링 검사 허용(비용·시간 절약)
결합키 사용 제한		결합키 다양화(결합률 향상)

## 공익 목적 AI 개발·활용 지원

- ▶ 데이터, AI 기술 → 사회적 난제 해결, 민생범죄 예방
- “데이터 시대 공익적 가치 창출”**



# 5. 국제논의 주도

## (1) UN AI 고위급 자문기구

- 고학수 위원장은 운영위원 및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논의에 주도적 참여
- AI 특성과 위험 대응에 적합한 거버넌스 설계 논의  
→ ('23.12월) 중간보고서 발표 → ('24.8월) 최종보고서 발표

## (2) GPA

- 전세계 140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글로벌 협의회
- 개인정보위는 집행위원 및 AI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
- '25.9월(잠정) GPA 총회 유치 - 국내에서 AI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장 마련

## (3) 해외 감독당국간 소통

- 프랑스 CNIL 등과 AI 정책 관련 협의(정기)

## (4) 글로벌 기업과 소통

- (요청 시) 수시

### ※ (참고) '24년 AI 국제협력 주요일정

- ✓ 3·5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대면회의
- ✓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
- ✓ 4월 IAPP Global Privacy Summit
- ✓ 5월 AI 서울 정상회의 + AI 글로벌 포럼
- ✓ 5월 개인정보위 AI 컨퍼런스
- ✓ 8월 UN 최종보고서 발표
- ✓ 9월 UN 미래정상회의
- ✓ 9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(REAIM)

# 1.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

추진  
배경

-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온라인 행태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,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  
→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 
「맞춤형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」 발표('24.1.)

## ①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- 광고 사업자

개인을 식별하여 처리하려는 경우

수집이용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수집 요건 구비</li> <li>➢ 모든 맞춤형 광고의 경우, 안내 표지 설치</li> <li>➢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태정보 수집</li> </ul>
이용자의 통제권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이용자에게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공 (광고 화면, 이용자 단말기 등)</li> </ul>
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만큼 행태정보 보관</li> <li>➢ 행태정보의 유노출,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</li> </ul>
인식확산 및 피해구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맞춤형 광고와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적극 안내</li> <li>➢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능 마련</li> </ul>

# 1.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

## ①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- 광고 사업자

###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경우

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준수 시, 동의 받지 않고 처리 가능

#### 결합 금지 (의무)

-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분리
- 개인정보와 행태정보 간 매칭키를 생성하지 않을 것
- 식별성이 높은 정보를 식별자 및 행태정보에 포함하지 말 것

#### 투명성/사후 통제권 (권고)

- 모든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안내 표시
- 안내 표시 클릭 시, 행태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 제공

#### 안전한 처리 (권고)

- 행태정보의 안전한 보관기간(6개월 이내를 권장하나 예외 허용)
- 개인 식별성 발생에 대한 주기적 점검

###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의 경우

**(의무)**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제공 시,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

**(권고)** 14세 미만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,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·활용하지 않아야 함

# 1.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

## ②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- 광고 매체 사업자

### 행태정보 처리내역 공개

권고

-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이외에도 웹사이트·앱에서 개인정보 자동 수집도구를 통하여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

### CPO의 관리책임 부여

권고

- 자신의 웹사이트·앱에 설치된 개인정보 자동 수집도구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  
※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수집도구 삭제

###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

권고

- 14세 미만 아동이 주된 이용 대상자인 웹사이트·앱의 경우,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 자동 수집도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

# 1.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

## ③ 인앱 브라우저(In-app Browser)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

- 로그인된 상태에서 인앱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통상의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로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어 권리 보호 위험 발생
- ▶ 악용할 경우, 이용자의 개인정보 추적이 가능하며 유효한 동의 없이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위험 존재
  - ▶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고, 많은 앱에서 인앱 브라우저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 존재



- ① (이용자 동의)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,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처리방침에도 관련 내용 기재 **(의무)**
- ② (수집 제한) 서비스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 수집 제한 **(의무)**
- ③ (이용자 통제권) 앱 설정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브라우저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단 제공 **(권고)**

# 1.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

◇ 향후 추진 방향 :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·관 협의체 운영 및 가이드라인 마련

'24.1월 발표

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 
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

2024. 1.



1

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 
①광고 사업자, ②광고 매체 사업자에게  
처리 유형별 행태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등을 제시

2

정보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

3

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

4

민·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

「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·관 협의체」를 구성하고,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 
「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」 개정·발표 (~'24.12월)

## 2.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선

### 필요성

국경 없는 온라인 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, 기존 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**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**

### 사례



한국

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상품 구매 시, 국내 쇼핑몰이 해외 판매자에게 배송 및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그 때 마다 동의를 요하는 불편이 있음



EU

EU 국민은 해외 상품 구매 과정에서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결정, 표준 계약 조항 등에 기하여 동의 없이 이전 가능 (통상 협상 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개선 요청 지속)

### ※ GDPR 적정성 결정

유럽연합(EU)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적정성 결정('21.12.17.)으로  
선진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로서 인정 및 법적 리스크, 시간·비용 부담 대폭 완화

\* 한국기업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EU로부터 국내로 개인정보 이전 가능(EU 공공데이터 포함)

## 2.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선

### 개정내용

해외 법제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외 **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다양화**하고, **중지 명령권을 신설**하여 보호조치 강화

#### 요건 다양화

국외 이전 요건을 **개인정보 보호 인증**을 받은 경우, 이전되는 **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수준을 인정**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

- 국외 이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해 '**국외이전전문위원회**'를 운영, '**개인정보 보호 인증**' 및 '**국가 인정**'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

※ (인증) 인증 전문기관 평가 → 전문위원회 →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심사 절차, 유효기간(5년 내) 등 규정  
(국가 인정) 전문위원회 →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심사 절차, 인정 기준, 동등 수준 유지여부 점검 등 규정

#### 보호조치 강화

국외 이전 관련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(또는 국가 등)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한 **국외 이전 중지 명령권** 신설

-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\*과 이의 제기 절차 등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

\* 이전된 개인정보의 유형·규모, 위반의 중대성 정도, 피해의 정도 및 긴급성, 중지명령에 대한 이의 형량, 법 제64조제1항 시정조치 가능 여부, 해당 국가의 피해구제 절차 등

### 기대효과

개인정보 **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**하여 **법의 유연성**을 제고하는 한편, **국외 이전 중지 명령권**으로 국외 이전에 따른 **안전망 강화**

# 3.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



## 1.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

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(교육·학습, 식음료, 정보방송통신) 및  
신산업 3대 분야(스마트카, 인공지능, 슈퍼앱) 집중 점검



## 2. AI/데이터 시대 새로운 규율체계 활성화 병행

참여자 간의 합의(거버넌스 모델)를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고도화  
시스템·SW의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설계·컨설팅 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성화



## 3. 법 적용 사각/회색 지대 해소로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

중장기 조사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신규 이슈 발굴 및 신속·효율적 조사처분 방안 검토,  
분쟁조정 활성화, 손해배상 책임보장제 대상 확대 등 피해구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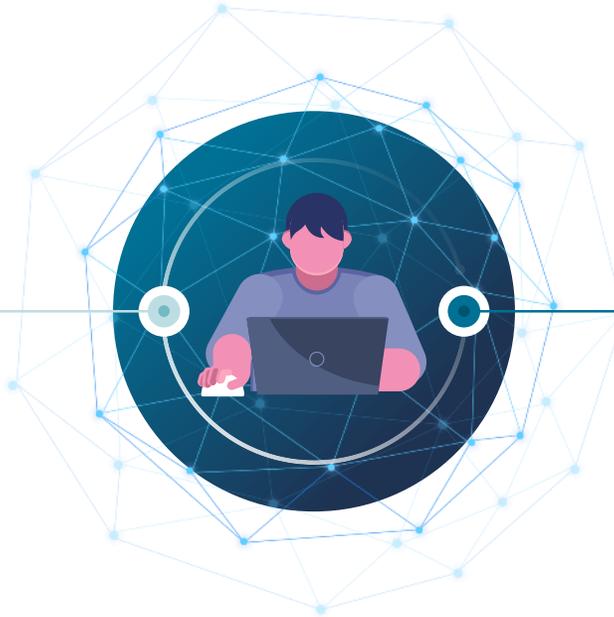
# 4.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



국민 일상을 변화시키는  
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출 지원

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 
5개 과제 발굴·지원

전송요구권 세부기준 마련



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 
기술적 인프라 마련



전송규격·기술요소 등 표준 수립

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

**'25년 상반기 중 통신, 유통,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우선 추진**  
문화, 여가, 교육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 확대 추진

- 감사합니다 -

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